

[양식 제1호]

출생신고서	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년 월 일)	

① 출 생 자	성명	한글 (성) / (명)	본 (한자)	성별	남	혼인중의 출생자
		한자 (성) / (명)			여	혼인외의 출생자
	출생일시	년 월 일 시 분(출생지 시각: 24시간제)				
	출생장소	자택 병원 기타				
	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					
	주소	세대주 및 관계 의				
	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					

② 부 모	부 성명	(한자:)	본(한자)	주민등록번호	-
	모 성명	(한자:)	본(한자)	주민등록번호	-
	부의 등록기준지				
	모의 등록기준지				

혼인신고서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? 예 아니요

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					
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-		
	등록기준지				

④기타사항					
⑤ 신 고 인	성명	™ 또는 서명	주민등록번호	-	
	자격	부 모 동거친족 기타(자격:)			
	주소				
	전화	이메일			

⑥ 제출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	
-------	----	--------	---	--	--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※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생자에 관한 사항					
⑦임신주(□)수	임신 □□주 □일	⑧신생아체중	□.□□□ kg		
⑨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	단태아 쌍태아(쌍둥이)	→	쌍둥이 중 첫번째	두번째	
	삼태아(세쌍둥이) 이상	→	□ 쌍둥이 중 □ 번째		

출생자의 부(□)에 관한 사항			출생자의 모(□)에 관한 사항		
⑩국적	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		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		
	대한민국구획(수변포함)인시국적취득 이전국적:]	외국(국적)	대한민국구획(수변포함)인시국적취득 이전국적:]	외국(국적)	
⑪실제생년월일	양력 / 음력 년 월 일		양력 / 음력 년 월 일		
⑫최종졸업학교	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(교) 대학원 이상		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(교) 대학원 이상		
⑬직업	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		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		
	⑭학생 기사 2인 3직		⑭학생 기사 2인 3직		
⑮실제결혼생활시각일	년 월 일 부터				
⑯모의 출산산아 수	이 아이까지 총 □□명 출산 (□□명 생존, □명 사망)				

※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
	주민등록번호	
	년 월 일(인)	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(인명용 한자)으로, 이름자는 5자(성은 포함 안 됨)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,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(www.scourt.go.kr/minwon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: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. (예: 오후 2시 30분 → 14시 30분)
 :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“(서머타임 적용)”이라고 표시합니다.
 :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.
 :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(시군의 ‘동’, 읍면의 ‘리’) 또는 도로명주소의 ‘도로명’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.
- ②란: 부(□)에 관한 사항 - 혼인의 출생자를 모(□)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,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,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“부미경”으로 기재합니다.
- ③란: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,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- 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: 선순위자(부모)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
 -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
 -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: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.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.
 - 외국인인 부(□)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: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
 - 「민법」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명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
- ⑥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⑦~⑨ 출생자란: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.
- ⑨란: 다태아(쌍둥이 이상)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“○”표시하며,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.
- ⑩~⑮ 부모란: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.
- ⑫란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합니다.
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: 고등학교에 “○”표시
- ⑬란: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
관리자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)
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
 사무종사자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(경영, 보훈, 감사, 상담안내통계 등)
 서비스종사자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의료보조, 이따용, 환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과 관련된 업무
 판매종사자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홍보 등
 농림어업숙련종사자: 작물의 재배추확, 동물의 번식자육, 산림의 경작 및 개벌,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
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,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, 운송장비의 운전 등
 단순노무종사자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 1사: 전업주부 등 2인: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, 직업군인 해당 3유작: 특정한 직업이 없음

- ⑮란: 모의 총 출산아수 -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,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.

첨부 서류

1. 출생증명서 1통(다음 중 하나).
 -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.
 -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(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).
 -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(또는 출생증명서)와 번역문.
- ※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.
2. 출생자의 부(□) 또는 모(□)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.
 - 부(□)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(□)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.
 -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(□□□)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.
 3. 자녀의 출생당시 모(□)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(예: 모의 기본증명서) 1통(1998. 6. 14.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).
 4.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(□) 또는 모(□)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(□) 또는 모(□)에 대한 성명,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(예: 여권, 주민등록등본, 그 밖의 증명서).
 5.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.
 6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